



제 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 〉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83호)
-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366호)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60호)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643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5
1. 총괄 검토	5
2.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 마련(허종식의원안)	7
3. 방재기상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박해철의원안)	11
4. 기상학적 가뭄 감시·예보 정보체계 신설(박홍배의원안)	16
5. 분야별 위험기상정보 제공 근거 신설(김태선의원안)	19

I. 제안경위

연번	의안번호	법률명	발의일	회부일	대표발의
1	221928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6	2026.07.01	박홍배의원
2	2219366		2026.06.19		허종식의원
3	2219560		2026.06.26		김태선의원
4	2219643		2026.06.30		박해철의원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9283호)

기후변화로 강수 변동성이 커지고 가뭄 발생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가뭄 대응은 사후적인 피해 대응보다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이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기상학적 가뭄은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 유량, 산불 위험 등 국민 생활과 재난 대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신호로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와 예보가 필요한 영역임.

현행법은 기상청장에게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에 필요한 가뭄 데이터의 수집·분석, 기상학적 가뭄의 감시,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는 부족

한 상황임. 이에 따라 기상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상가뭄 감시·분석·예보 업무와 법령상 업무 범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가뭄 대응에 필요한 정보 생산과 연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상학적 가뭄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생산·제공하고, 국가 가뭄 대응 과정에서 기상정보의 활용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2. 허종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9366호)

현행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예보·특보를 통해 국민들이 해당 기상과 관련한 활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면서 해당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서 재생에너지기상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기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상청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5 및 제14조의4 신설).

3.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9560호)

최근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이나 안개 정보, 농어업분야에서는 우박, 서리, 해양분야에서는 해무 및 풍랑 정보, 산림 소방 분야에서는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기상청은 관련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로, 산불, 농업 및 해양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험기상 정보의 분석·생산·제공을 기상청의 업무로 명시하고,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5 신설).

4.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9643호)

기상청은 기상현상과 직접적·간접적으로 관련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방재기상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 아울러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및 지원을 위해 방재기상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연 2회 방재기상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해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방재기상 업무의 개념이나 정보 공유 시스템 운영, 대책 수립 및 부처 간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재기상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방재기상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의2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4개의 개정안은 각각 ① 재생에너지기상, ② 방재기상, ③ 기상학적 가뭄, ④ 위험기상 등에 대한 정보의 생산·제공·감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재생에너지기상은 산업의 이용목적, 위험기상은 피해발생 가능성, 방재기상은 재난대응을 위한 행정활동을 기준으로 특화된 기상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아래의 개정안 비교표에서와 같이 개념이 유사하거나 정보의 범위가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각각의 개정안 심사 시 관련 제도 간 관계, 개념 및 용어의 정합성 및 현행법 체계와의 부합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4개 개정안 비교표]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의 유사·중복
① 재생에너지기상	‘재생에너지기상’ 정의, 발전량 예측·설비 운영 지원 기상정보 제공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산업별 맞춤형 정보와 유사
② 방재기상	방재기상 정의, 정보시스템구축, 방재기상 대책, 방재기상대책정책협의회	기상학적 가뭄, 위험기상과 재난정보 생산·제공 측면에서 유사·중복
③ 기상학적 가뭄	데이터 수집·분석, 가뭄감시, 정보시스템 구축	방재기상과 유사
④ 위험기상	도로·산림·농업·해양 위험정보, 분야별 정보시스템 구축	현행 특보체계 및 방재기상과 유사·중복

참고로, 현행법은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상정보 외에도 기후자료를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융합특화기상정보’¹⁾를 생산·제공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²⁾에서는 융합특화 기상정보를 생활안전 분야(자외선, 꽃가루 등), 교통안전 분야(자동차, 항공기 등), 산업 분야(농림수산업, 재생에너지 등)로 구분하고 있음.

[「기상법」 본문]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관측 제7조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제7조의2 지상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제7조의3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제7조의4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제8조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제8조의2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제9조 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청 제11조 관측 결과 등의 발표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제2조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12조의2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제5장 예보 및 특보 제13조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제13조의2 특보 제13조의3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제13조의4 태풍예보 제14조 해양기상예보 및 해양기상특보 제14조의2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제14조의3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제14조의4 예보, 특보 및 예비특보의 알람 제15조 ~ 제17조의2 (중간 생략) 제6장 ~ 제11장 (이하 생략)
--	--

- 1) **현행법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①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자료 및 응용자료와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 **현행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 생략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기후자료의 통합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및 도표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응용자료 및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생산하는 융합특화기상정보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 분야: 자외선 노출, 꽃가루 확산 등 일상생활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2. 교통안전 분야: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의 운행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3. 산업 분야: 농업, 수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 그 밖의 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4. 그 밖에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이하 생략.

2.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 마련(허종식의원안)

개정안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사량이나 풍속 같은 기상정보의 제공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를 신설 및 재생에너지기상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5 및 제14조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의4. (생략) <u><신설></u> 5. ~ 1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의4. (현행과 같음) <u>4의5. “재생에너지기상”이란 태양에너지,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u> 5. ~ 15. (현행과 같음) <u>제14조의4(재생에너지기상 정보의 제공) ① 기상청장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의 예측,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기상</u>

	<u>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기</u> <u>상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u>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4조의4</u> (예보, 특보 및 예비특 보의 알림) (생략)	<u>제14조의5</u> (예보, 특보 및 예비특 보의 알림) (현행 제14조의4와 같음)

현행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해양기상·항공기상·수문기상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예보·특보를 통해 국민이 관련 활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재생에너지기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안 제2조제4호의5)와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안 제14조의4)를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태양광과 풍력은 일사량·풍향·풍속 등 기상조건에 따라 출력이 크게 달라지므로, 재생에너지원의 확대에 따라 정확하고 세분화된 기상정보

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기상청은 2026년 2월부터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공개하여 풍력 입지선정을 위한 바람 재현자료와 태양광 입지분석을 위한 일사량 자원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바, 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상정보 제공을 기상청의 업무로 명시한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아래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12조의2³⁾에서 기후자료를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융합특화 기상정보’를 생산·보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⁴⁾

-
- 3) **현행법 제1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① 기상청장은 기후자료를 수집·관리하고 각종 응용자료를 생산하여 그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국민이 기후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통합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기후자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자료 및 응용자료와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4) **현행법 시행규칙 제2조의2(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를 국내외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수집된 기후자료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기후자료의 통합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후자료를 활용하여 통계분석 및 도표화 등의 방법으로 각종 응용자료 및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융합특화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생산하는 융합특화기상정보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 분야: 자외선 노출, 꽃가루 확산 등 일상생활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2. 교통안전 분야: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의 운행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3. 산업 분야: 농업, 수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스마트도시 관련 산업, 그 밖의 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에 있어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
4. 그 밖에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는 분야로서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 이하 생략.

에서는 그 대상인 산업 분야에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기상청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바람 분석정보와 일사량 자원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해양기상·항공기상·수문기상은 각각 해양·항공·수문이라는 특정 영역의 기상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개정안의 재생에너지기상은 기존의 일사량·풍향·풍속 등 기상현상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이용목적에 따라 특화된 정보의 성격이 강하므로, ‘재생에너지기상’을 독립된 기상현상으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태양에너지, 풍력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⁵⁾은 재생에

5)(시행예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너지에 태양에너지와 풍력뿐 아니라 수력·해양에너지·지열에너지·바이오에너지·폐기물에너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3. 방재기상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박해철의원안)

개정안은 기상현상과 관련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방재기상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재기상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방재기상플랫폼 구축·운영과 방재기상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조의2호,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방재기상”이란 기상현상과 직접적·간접적 관련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이하 생략

9. ~ 14. (생략)

제19조의3(기상재난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이 조에서 “기상재난”이라 한다)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생략)

<신설>

“기상재난”이라 한다)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기상정보를 생산·제공 및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 14.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방재기상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방재기상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상청장은 방재기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

③ (생략)

<신설>

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방재기상에 이용·활용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9조의4(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방재기상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방재기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방재기상대책 수립 및 시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재기상정책협의

	<u>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재기상대책 수립 및 방재기상정책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	---

현재 기상청은 기상현상과 관련된 재난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방재기상 업무를 「방재기상운영규정」(기상청 훈령 제1184호)⁶⁾ 및 직제 등에 근거하여 수행해 왔고, 2003년부터 매년 여름·겨울철 방재기상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방재기상플랫폼을 구축·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방재기상의 개념, 방재기상플랫폼의 구축·운영,

6) 「방재기상운영규정」(기상청 훈령 제1184호)

방재기상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방재기상조직의 구성과 임무 제2조 조직의 구성 제3조 방재본부장 제4조 방재부분부장 제5조 방재기상본부장 제6조 방재기상정책부장 등 제7조 방재기상지원부장 등 제8조 방재기상상황부장 등 제9조 방재기상지방본부장 제10조 방재기상지원센터 제11조 특별대응반 제12조 재난현장지원반	제3장 비상근무 제13조 비상근무의 단계 등 제14조 비상근무 발령 등 제15조 근무방법 등 제4장 특별기상지원 및 특이 기상현상 관측보고 제16조 제17조 긴급방송의 요청 제18조 제19조 특별관측 등 제20조 특이 기상현상의 보고 제5장 방재기상정책협의회 제21조 방재기상정책협의회 설치 제2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방재기상정책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관계기관의 참여나 협력 및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방재기상의 법적 정의(안 제2조제8호의2)를 신설하고, 방재기상플랫폼 구축·운영(안 제19조의3제3항), 방재기상대책의 수립 및 방재기상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안 제19조의4)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직제 및 훈령 등에 따라 운영되어 온 방재기상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은 그동안 직제 및 훈령 등에 따라 운영되어 온, 기상청의 방재기상대책 수립, 정책협의회 운영 및 방재기상플랫폼 구축·운영 등 방재기상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인데, 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 분야에 대해서도 「방재지진화산운영규정」을 통해 유사한 방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또한, 개정안은 방재기상정책협의회 구성원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 반면, 방재기상플랫폼의 이용·활용 의무는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전체에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플랫폼을 실제 활용하는 주요 공공기관 등을 정책협의회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기상학적 가뭄 감시·예보 정보체계 신설(박홍배의원안)

개정안은 기상학적 가뭄의 체계적인 감시와 예보를 위하여 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u>가뭄의</u> 예보) ① (생략)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u>가뭄 감시와</u> 예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 (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u>예보를</u> 하여야 한다.	② ----- ----- ----- ----- ----- ----- <u>가뭄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u> <u>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u>

③ (생략) <u><신설></u>	<u>예보를-----.</u> ③ (현행과 같음) <u>④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감시와 예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u>
--------------------------------------	--

현행법 제13조의37)은 기상청장에게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8)에서는 기상학적 가뭄 예보를 시·군 단위의 1개월·3개월 전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후업무규정」에서는 기상가뭄 현황 및 전망의 제공과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9).

- 7) **현행법 제13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는 제외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종류·내용 및 대상구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현행법 시행령 제8조의3(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① ② 생략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이하 “기상학적 가뭄”이라 한다)의 예보는 시·군 단위로 한다. 이 경우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1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주를 기준으로 다음 다섯 번째 주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2. 3개월 전망: 발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세 번째 달까지의 기상학적 가뭄의 전망
 ④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대상구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문기상 정보의 제공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및 발표시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 9) **기후업무규정(기상청 훈령 제1160호) 제22조(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내용 및 발표시각 등)** ① 「기상

그런데 현행 가뭄의 예보에는 기상학적 가뭄에 대한 예보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가뭄 데이터의 수집·분석, 기상학적 가뭄의 감시 및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여, 관계기관의 참여나 협력 및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가뭄의 조기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상학적 가뭄의 감시·분석 및 정보체계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법은 이미 기상청장에게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기후업무규정」에서는 예보 시 누적강수량·기상가뭄 단계 등 가뭄 현황과 전망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수문기상 정보 제공 및 기상가뭄 예보를 위한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법 시행령」 제8조의3제3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 예보(이하 "기상가뭄 예보"라 한다)의 발표시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발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다음날에 발표할 수 있다.

1. 1개월 전망: 매주 목요일 11시 발표

2. 3개월 전망: 매월 23일 11시 발표

② 기상청장은 기상가뭄 예보를 발표 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상가뭄 현황: 누적강수량, 기상가뭄 단계

2. 기상가뭄 전망: 기상가뭄 단계

③ 기상가뭄 예보 세부 대상구역은 시·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한다.

④ 기상청장은 그 밖에 선제적인 가뭄 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상가뭄 6개월 전망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제23조(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기상청장은 「기상법」 제13조의3에 따른 수문기상 정보 제공 및 기상가뭄 예보를 위하여 수문기상 가뭄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또한, 현재 기상청은 기상 정보와 수문 정보를 통합한 ‘수문기상 가
물정보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개정안은 ‘기상학적 가물’ 정보체계만
을 규정하고 있어, 현행 ‘수문기상 가물정보 시스템’¹⁰⁾의 운용 범위, 관
리 범위 및 정보체계의 명칭을 실제 운영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가물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기상학
적 가물을 감시·예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가물 데이터’의 정의나 범위
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기상청은 현재 자체 기상자료
뿐 아니라 관계기관으로부터 강수량·토양수분·댐 및 저수지의 저수량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기상가물 감시·분석에 활용하고 있음¹¹⁾.

따라서 개정안의 ‘가물 데이터’의 구체적인 내용 및 관계기관에 대
한 자료제출 요청, 정보 연계 및 공동활용에 관한 근거 등을 하위법령
에 위임하거나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
요가 있음.

5. 분야별 위험기상정보 제공 근거 신설(김태선의원안)

개정안은 도로, 산림, 농업 및 해양 등의 분야에서 피해를 발생시킬

10) 수문기상 가물정보 시스템은 2022년 통합 구축되었으며, 수문기상 관측·예측·분석과 기상가물 감시·예보·
분석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11) 기상청은 홍수통제소·한국수자원공사·산림청·지자체 등의 강수량, 농촌진흥청의 토양수분, 한국수자원공
사·한국농어촌공사의 댐·저수지 저수량 등을 수집·활용하고 있음.

우려가 있는 기상현상(이하 “위험기상”이라 함)에 대한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u><신 설></u>	<u>제13조의5(위험기상 정보 등의 생산 및 제공) ① 기상청장은 도로, 산림, 농업 및 해양 등의 분야에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상현상(이하 “위험기상”이라 한다)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기상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할 수 있다.</u> <u>1. 도로살얼음·안개 등 도로 위험기상 정보</u> <u>2. 건조·바람 등 산불위험성 등 산림 위험기상 정보</u> <u>3. 서리·우박 등 농업 위험기상 정보</u> <u>4. 해무·풍랑 등 해양 위험기상 정보</u> <u>② 기상청장은 제1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제공하기 위</u>

	해 필요한 분야별 정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

최근 도로 분야에서는 도로살얼음이나 안개 정보, 농어업분야에서는 우박, 서리, 해양분야에서는 해무 및 풍랑 정보, 산림 소방 분야에서는 산불 관련 기상정보 등 분야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기상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여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도로, 산불, 농업 및 해양 등 4개 분야에 대한 위험 기상 정보의 분석·생산·제공을 기상청의 업무로 명시하고, 기상청장은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다만, 현행법 제12조의2는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한 ‘융합특화 기상정보’의 생산·보급 근거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교통안전 및 농업·수산업 등 산업 분야를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기상영향예보, 제14조에서는 해양기상예보 및 특보에 관한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어서 현행법상으로도 관련 정보의 생산·제공이 가능한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특히 해양분야의 경우 이미 현행법 제14조에서 독립된 해양기상예보·특보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양 위험기상 정보’라는 별도의 체계를 두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또한, 개정안은 도로·산림·농업·해양 분야에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기상현상을 ‘위험기상’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상현상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상영향’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기상현상에 대해서는 특보 제도를 두고 있음.¹²⁾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위험기상’과 현행법상 ‘기상현상’, ‘기상영향’ 및 ‘특보’ 대상 간의 개념적·제도적 관계를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위험기상’ 개념을 신설할 필요성과 그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2

12) 안 제13조의5제1항 본문은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상현상(이하“위험기상”이라 한다)”이라는 정의를 신설 조문자체에 두고 있으나, 현행 「기상법」은 이미 제13조의2(특보) 등에서 사실상 동일한 개념 -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상현상에 대한 경고성 정보-을 특보체계로 규율하고 있다.